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심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의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8조)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
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취지가 있습니다.

○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